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01 발의연월일: 2025. 6. 10.

발 의 자:문대림・허성무・윤준병

김한규 • 임오경 • 안도걸

곽상언 · 주철현 · 송옥주

전종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,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 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.

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,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 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,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 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전단 중 "차"를 "차(자전거등은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앞지르기 방법 등) ① (생	제21조(앞지르기 방법 등) ①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	②		
하거나 정지한 다른 <u>차</u> 를 앞지	<u>차(자전거</u>		
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	<u>등은 제외한다)</u>		
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.			
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			
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			
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			
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			
시정지하여야 한다.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